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17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이수진·한정애·이원택

송옥주 • 백혜련 • 김정호

송재봉 • 민형배 • 최기상

김문수 • 추미애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 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 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임.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9.6%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23.4%, 종합병원 43.1%로 오히려 수요 대비 상급종합병원이 통합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44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 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 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일부 병상을 제외할 수 있다.
 - 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 중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

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⑦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⑧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 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법률 제20445호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 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 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 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 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

법률 제20445호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 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 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 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 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 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 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

- 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병상을 제외할 수 있다.
- 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을 하여야 한다.

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 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u>한다.</u>

> <u>⑧</u>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